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우주신기술"이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우주신기술을 말한다.

제2장 우주신기술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우주신기술 평가기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주신기술 평가제도의 운영 계획 수립
2. 우주신기술 평가·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의견조회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전문분과위원회 : 위성분야
2. 제2전문분과위원회 : 발사체분야
3. 제3전문분과위원회 : 우주관측탐사분야
4. 제4전문분과위원회 : 그 밖의 유형(우주용 반도체, 우주 소자, 소재 및 기타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그밖에 청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⑦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

2. 제14조의 의견조회에 대한 심사

3. 법 제18조의7제4항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4.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⑧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의 심사결과 및 제7항제3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3차 심사

2. 제4조제7항 제3호의 지정 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종합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심사참여 동의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위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우주신기술 지정 절차

제8조(지정신청서 제출) ①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

과 같다.

1. 1차 심사 : 서류·면접심사
2. 2차 심사 : 현장확인심사
3. 3차 심사 : 종합심사

② 청장은 3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주신기술 지정에 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별표 2의 서식으로 영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절차의 일부(3차 심사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1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서류·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하여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2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는 신청 기술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1차 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기술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차 심사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2차 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2차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및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참여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기술을 3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3차 심사)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3차 심사(종합심사)는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결과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3차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청기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 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우주신기술 지정에 동의한 기술을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로 한다.

제13조(지정예정 공고 등) 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신기술이 지정예정기술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한다)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① 제13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예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의견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의견신청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서와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분과위원회는 의견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신청인과 의견제출자(이하 "이해당사자"라 한다)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의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후속지원) 청장은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신기술 및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홍보, 우주환경시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우주신기술의 우주개발사업 적용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주신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기술 현황
2. 우주신기술의 생산·판매 실적
3. 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품질평가
4.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우주신기술의 성능

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의7제4항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영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수당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고객만족도 조사) 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제4장 보칙

제21조(업무의 위탁) 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우주신기술 개발현황 조사, 심사지원 등 관리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지침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23조(행정기관간 협조)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특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특례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 고시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를 면제 한다.

■ [별표 1]

우주신기술 세부심사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1차 심사	<p><u>A.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 혁신성: 신기술인지, 기존 기술을 개선한 기술인지 여부 2. 기술 탁월성: 기술 특성, 핵심기술 비중 등의 정도 3. 기술 신뢰성: 기술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p><u>B. 보급활용성 평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모델 적합성 : 개발한 기술이 경제성 있게 설계된 정도 2. 시장창출 가능성 : 기술관련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고도화 가능 정도 3. 파급효과 : 타 산업과 융합, 관련 후속기술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 정도 <p><u>C. 공공성 평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현안 부합성: 공공 우주개발진흥에 기여하는 정도 <p><u>D. 추가 확인사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기술 관련 확인자료 3. 기타 추가확인 필요자료 등 	평가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2차 심사	<p><u>A. 기술평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5. 기술의 구조, 성능정도 6.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7. 기술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p><u>B. 품질경영체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평가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
3차 심사	·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평가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신청인 기업 (기관 작성)		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기술 현황 (기관작성)	신기술 명칭	▶	
	신기술 유형	▶	
	신기술 내용	▶	
	인증	▶ 기술인증 : ▶ 품질인증 :	
검토의견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기술분야	구분	세부 기술분야(중분류)
위성분야	1	구조계
	2	열 제어계
	3	궤도 및 자세제어계
	4	추진계
	5	전력계
	6	원격측정명령계
	7	광학탐재체
	8	전파탐재체
	9	항법탐재체
	10	광대역통신방송 탐재체
	11	과학시험탐재체
	12	탐재 소프트웨어
	13	기타
발사체분야	1	추진제 공급시스템
	2	제어계
	3	구조계
	4	전자계
	5	열제어 및 공력설계
	6	메인엔진
	7	상단엔진
	8	고체모터
	9	기타
우주관측탐사	1	원격탐사 및 우주환경 관측
	2	표면현장 탐사
	3	우주통신
	4	우주감시
	5	샘플회수 및 지구 재진입
	6	궤도상 서비스
	7	기타
그 밖의 유형 (반도체, 소자, 소재 및 기타분야)	1	우주용 반도체
	2	우주 소자 및 소재
	3	기타(우주과학, 우주에너지, 우주의학 등)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1차 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평가 항목			점수												
신규성 · 진보성 평가 (50)	기술 혁신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없는 신기술인지, 기존에 있던 기술을 개선한 기술인지 여부 ☐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기술(20) ☐ 기존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16)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12)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8) 													
	기술 탁월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특성이 뛰어나고, 기술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타 기술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여부 <table border="1"> <tr> <td></td> <td>기술 우수성</td> <td>매우 높음</td> <td>비교적 높음</td> </tr> <tr> <td>핵심기술 비중</td> <td>높음</td> <td>☐ (20)</td> <td>☐ (12)</td> </tr> <tr> <td></td> <td>낮음</td> <td>☐ (16)</td> <td>☐ (8)</td> </tr> </table>			기술 우수성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핵심기술 비중	높음	☐ (20)	☐ (12)		낮음	☐ (16)	☐ (8)
		기술 우수성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핵심기술 비중	높음	☐ (20)	☐ (12)												
	낮음	☐ (16)	☐ (8)												
기술 신뢰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보급 활용 성 평가 (40)	사업모델 적합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 () () () 매우우수(15) (12) (9) (6) 매우미흡(3) 													
	시장창출 가능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술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매우우수(15) (12) (9) (6) 매우미흡(3) 													
	파급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후속기술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table border="1"> <tr> <td></td> <td>사업영역 확대</td> <td>높음</td> <td>낮음</td> </tr> <tr> <td>부가가치</td> <td>높음</td> <td>☐ (10)</td> <td>☐ (6)</td> </tr> <tr> <td></td> <td>낮음</td> <td>☐ (8)</td> <td>☐ (4)</td> </tr> </table>			사업영역 확대	높음	낮음	부가가치	높음	☐ (10)	☐ (6)		낮음	☐ (8)	☐ (4)
	사업영역 확대	높음	낮음												
부가가치	높음	☐ (10)	☐ (6)												
	낮음	☐ (8)	☐ (4)												
공공성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공공 우주개발진흥에 기여하는 기술인지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음(10)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일부 관련이 있음(8)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련이 낮음(5) 													
합계															
추가 확인 사항	추가제출 필요자료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기타:													

년 월 일 심사위원 : _____ (서명)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2차 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심 사 결 과		☐ 3차심사 상정 ☐ 2차심사 탈락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기술평가		
	품질경영 체계		
	기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3차 심사)

과제번호	기 술 명	선정여부(○,×)
우주신기술 지정이 부적당한 기술에 대한 사유		
과제번호	사 유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공고 의견서

의견신청인	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기술명			
	신청사유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지정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의견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공고 의견신청 답변서

의견신청 답변인	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답변내용	기술명			
	의견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우주신기술 심의예정 공고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의견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	---------------------------------------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공고 의견신청 평가서

의견신청대상	기술명		기관명	
의견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심 사 결 과	☐ 제출의견 수용 ☐ 제출의견 기각(선정) ☐ 제출의견부분수용(기술명 변경 등) ☐ 기타()			
결 정 사 유				
평 가 내 용	기술 내용			
	기술 수준			
	제품 성능			
	기 타 (산업재산권 등)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우주신기술 지정중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명칭	기술명		
신청인	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 분실·소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지정지침」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중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철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	--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기관명	부서(학과)	직위
전 화	전 송	
주 소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최종학위	
현 연구분야		
주요경력		
심사참여 희망(가능)위원회(전공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표)		
☐ 위성분야	☐ 발사체분야	☐ 우주관측탐사분야
☐ 그 밖의 유형(반도체, 소자, 소재 및 기타분야)		
심사비 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년도 우주신기술 지정제도 심사위원직을 수락하고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지정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우주항공청장 귀하

<p align="center"><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p> <p>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신기술 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등록 및 본인 확인과 수당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p> <p>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의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공 등 연구분야, 은행계좌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완료일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심사위원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의무 이행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p> <p>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신기술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합니다.</p> <p>*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p>
--

우주신기술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기술명 :

2. 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공장)			전 화	(본사) (공장)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매출액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수출액 (백만달러)	- 직전년도 : 만달러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적용제품 매출액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적용제품 수출액 (백만달러)	- 직전년도 : 만달러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주거래처				적용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적용제품 주경쟁업체		
인증기술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국내특허 출원 : 건,				

3. 우주신기술 지정 이후 후속 개발 현황

특허 출원(등록)	특허명칭	
	출원(등록)일자	20
	출원(등록)번호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	공인기관명	
	시험(인증)일자	20
	시험(인증)항목	
	시험(인증)결과	
기타 후속 개발 내용		

4. 생산 시설 보유 현황

소재지	
생산장비	1)
보유내용	2)
기타 현황	

5. 품질(경영)인증 및 품질관리 현황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간	20 ~ 20
기타 품질 인증 및 관리 진행 현황		

6. 종합 의견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 체계
생산 및 공정관리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구매 및 자재관리
품질경영 및 생산성 향상 활동

우주신기술 실적 보고서

[illegible]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지정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신기술 관련 실적을 제출합니다.

도 양 이

기관명 :

대표자 :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